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의자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3536 |
|----------|-------|

발의연월일 : 2025. 10. 13.

발 의 자 : 임의자 · 이종배 · 김승수  
권영세 · 최은석 · 서일준  
이성권 · 김형동 · 이인선  
박성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원 목적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과 국민 향유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문화재구역입장료 폐지 이후 사찰이 증가한 탐방객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매년 지원금 정산 및 협의 절차 등 행정적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관람료 지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유산 보유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가 전통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과 향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 중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관람료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람료 감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관람료 감면에 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
| ① ~ ③ (생 략)            |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 ④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        | -----                      |
| 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 -----                      |
|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 -----                      |
|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u>국가</u> | ----- <u>대통</u>            |
| <u>지정문화유산</u> 관리를 위하여  | <u>령령으로</u> -----          |
|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 | ---- <u>관람료를 지원하여야 한다.</u> |
| 라 감면된 <u>관람료에</u> 해당하는 |                            |
| <u>비용을</u> 지원할 수 있다.   |                            |